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203)

[시행 2022. 12. 1.] [소방청공고 제2022-224호, 2022. 12. 1., 제정]

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2

03)

[시행 2022. 12. 1.] [소방청공고 제2022-224호, 2022. 12. 1., 제정]

국립소방연구원(소방정책연구실), 041-559-0587

- 1. 일반사항
- 1.1 적용범위
- 1.1.1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4 제2호다목과 라목에 따른 자동화재탐지설비와 시각경보장치의 설치 및 관리에 대해 적용한다.
- 1.2 기준의 효력
- 1.2.1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나목에 따라 경보설비인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기술기준으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 1.2.2 이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법 제2조제1항제6호나목에 따라「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 전성능기준(NFPC 203)」을 충족하는 것으로 본다.
- 1.3 기준의 시행
- 1.3.1 이 기준은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 1.3.2 특정소방대상물의 경보 방식 [소방청고시 제2022-10호, 2022, 5. 9., 일부개정]
- 2.5.1.2에 따른 기준은 발령 후 9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1.4 기준의 특례
- 1.4.1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기존건축물이 증축·개축·대수선되거나 용도변경 되는 경우에 있어서 이 기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설치해야 할 자동화재탐지설비의 배관·배선 등의 공사가 현저하게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설비의 기능 및 사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이 기준의 일부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 1.5 경과조치
- 1.5.1 이 기준 시행 전에 건축허가 등의 신청 또는 신고를 하거나 소방시설공사의 착공신고를 한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해서는 종전의「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에 따른다.
- 1.5.2 이 기준 시행 전에 1.5.1에 따른 신청 또는 신고를 한 경우라도 제정 기준이 종전의 기준에 비하여 관계인에 게 유리한 경우에는 제정 기준에 따를 수 있다.
- 1.6 다른 법령과의 관계
- 1.6.1 이 기준 시행 당시 다른 법령 또는 행정규칙 등에서 종전의 화재안전기준을 인용한 경우에 이 기준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기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1.7 용어의 정의
- 1.7.1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7.1.1 "경계구역"이란 특정소방대상물 중 화재신호를 발신하고 그 신호를 수신 및 유효하게 제어할 수 있는 구역을 말한다.
- 1.7.1.2 "수신기"란 감지기나 발신기에서 발하는 화재신호를 직접 수신하거나 중계기를 통하여 수신하여 화재의 발생을 표시 및 경보하여 주는 장치를 말한다.
- 1.7.1.3 "중계기"란 감지기·발신기 또는 전기적인 접점 등의 작동에 따른 신호를 받아 이를 수신기에 전송하는 장치를 말한다.
- 1.7.1.4 "감지기"란 화재 시 발생하는 열, 연기, 불꽃 또는 연소생성물을 자동적으로 감지하여 수신기에 화재신호 등을 발신하는 장치를 말한다.
- 1.7.1.5 "발신기"란 수동누름버턴 등의 작동으로 화재 신호를 수신기에 발신하는 장치를 말한다.
- 1.7.1.6 "시각경보장치"란 자동화재탐지설비에서 발하는 화재신호를 시각경보기에 전달하여 청각장애인에게 점멸형태의 시각경보를 하는 것을 말한다.
- 1.7.1.7 "거실"이란 거주・집무・작업・집회・오락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는 실을 말한다.
- 1.7.2 "신호처리방식"은 화재신호 및 상태신호 등(이하 "화재신호 등"이라 한다)을 송수신하는 방식으로서 다음의 방식을 말한다.
- 1.7.2.1 "유선식"은 화재신호 등을 배선으로 송 수신하는 방식
- 1.7.2.2 "무선식"은 화재신호 등을 전파에 의해 송ㆍ수신하는 방식
- 1.7.2.3 "유・무선식"은 유선식과 무선식을 겸용으로 사용하는 방식

2. 기술기준

- 2.1 경계구역
- 2.1.1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경계구역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정해야 한다. 다만, 감지기의 형식승인 시 감지거리, 감지면적 등에 대한 성능을 별도로 인정받은 경우에는 그 성능인정범위를 경계구역으로 할 수 있다.
- 2.1.1.1 하나의 경계구역이 2 이상의 건축물에 미치지 않도록 할 것
- 2.1.1.2 하나의 경계구역이 2 이상의 층에 미치지 않도록 할 것. 다만, 500 m² 이하의 범위 안에서는 2개의 층을 하나의 경계구역으로 할 수 있다.
- 2.1.1.3 하나의 경계구역의 면적은 600 m² 이하로 하고 한 변의 길이는 50 m 이하로 할 것. 다만, 해당 특정소방대 상물의 주된 출입구에서 그 내부 전체가 보이는 것에 있어서는 한 변의 길이가 50 m의 범위 내에서 1,000 m² 이하로 할 수 있다.
- 2.1.2 계단(직통계단 외의 것에 있어서는 떨어져 있는 상하 계단의 상호 간의 수평거리가 5 m 이하로서 서로 간에 구획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이하 같다) · 경사로(에스컬레이터경사로 포함) · 엘리베이터 승강로(권상기실이 있는 경우에는 권상기실) · 린넨슈트 · 파이프 피트 및 덕트 기타 이와 유사한 부분에 대하여는 별도로 경계 구역을 설정하되, 하나의 경계구역은 높이 45 m 이하(계단 및 경사로에 한한다)로 하고, 지하층의 계단 및 경사로(지하층의 층수가 한 개 층일 경우는 제외한다)는 별도로 하나의 경계구역으로 해야 한다.
- 2.1.3 외기에 면하여 상시 개방된 부분이 있는 차고·주차장·창고 등에 있어서는 외기에 면하는 각 부분으로부터 5 m 미만의 범위 안에 있는 부분은 경계구역의 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 2.1.4 스프링클러설비·물분무등소화설비 또는 제연설비의 화재감지장치로서 화재감지기를 설치한 경우의 경계 구역은 해당 소화설비의 방호구역 또는 제연구역과 동일하게 설정할 수 있다.

2.2 수신기

- 2.2.1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수신기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해야 한다.
- 2.2.1.1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경계구역을 각각 표시할 수 있는 회선 수 이상의 수신기를 설치할 것
- 2.2.1.2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에 가스누설탐지설비가 설치된 경우에는 가스누설탐지설비로부터 가스누설신호를 수신하여 가스누설경보를 할 수 있는 수신기를 설치할 것(가스누설탐지설비의 수신부를 별도로 설치한 경우에 는 제외한다)
- 2.2.2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수신기는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이 지하층 · 무창층 등으로서 환기가 잘되지 아니하거나 실내면적이 40 ㎡ 미만인 장소, 감지기의 부착면과 실내 바닥과의 거리가 2.3 m 이하인 장소로서 일시적으로 발생한 열·연기 또는 먼지 등으로 인하여 감지기가 화재신호를 발신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축적기능 등이 있는 것(축적형감지기가 설치된 장소에는 감지기회로의 감시전류를 단속적으로 차단시켜 화재를 판단하는 방식 외의 것을 말한다)으로 설치해야 한다. 다만, 2.4.1 단서에 따른 감지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2.2.3 수신기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 2.2.3.1 수위실 등 상시 사람이 근무하는 장소에 설치할 것. 다만, 사람이 상시 근무하는 장소가 없는 경우에는 관계인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관리가 용이한 장소에 설치할 수 있다.
- 2.2.3.2 수신기가 설치된 장소에는 경계구역 일람도를 비치할 것. 다만, 모든 수신기와 연결되어 각 수신기의 상황을 감시하고 제어할 수 있는 수신기(이하 "주수신기"라 한다)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주수신기를 제외한 기타 수신기는 그렇지 않다.
- 2.2.3.3 수신기의 음향기구는 그 음량 및 음색이 다른 기기의 소음 등과 명확히 구별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 2.2.3.4 수신기는 감지기・중계기 또는 발신기가 작동하는 경계구역을 표시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 2.2.3.5 화재·가스 전기등에 대한 종합방재반을 설치한 경우에는 해당 조작반에 수신기의 작동과 연동하여 감지 기·중계기 또는 발신기가 작동하는 경계구역을 표시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 2.2.3.6 하나의 경계구역은 하나의 표시등 또는 하나의 문자로 표시되도록 할 것
- 2.2.3.7 수신기의 조작 스위치는 바닥으로부터의 높이가 0.8 m 이상 1.5 m 이하인 장소에 설치할 것
- 2.2.3.8 하나의 특정소방대상물에 2 이상의 수신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수신기를 상호 간 연동하여 화재발생 상황을 각 수신기마다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것
- 2.2.3.9 화재로 인하여 하나의 층의 지구음향장치 또는 배선이 단락되어도 다른 층의 화재통보에 지장이 없도록 각 층 배선 상에 유효한 조치를 할 것

2.3 중계기

- 2.3.1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중계기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 2.3.1.1 수신기에서 직접 감지기회로의 도통시험을 하지 않는 것에 있어서는 수신기와 감지기 사이에 설치할 것
- 2.3.1.2 조작 및 점검에 편리하고 화재 및 침수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할 것
- 2.3.1.3 수신기에 따라 감시되지 않는 배선을 통하여 전력을 공급받는 것에 있어서는 전원입력측의 배선에 과전 류차단기를 설치하고 해당 전원의 정전이 즉시 수신기에 표시되는 것으로 하며, 상용전원 및 예비전원의 시험 을 할 수 있도록 할 것

2.4 감지기

- 2.4.1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는 부착 높이에 따라 다음 표 2.4.1에 따른 감지기를 설치해야 한다. 다만, 지하층 · 무창층 등으로서 환기가 잘되지 아니하거나 실내면적이 40 ㎡ 미만인 장소, 감지기의 부착면과 실내 바닥과의 거리가 2.3 m 이하인 곳으로서 일시적으로 발생한 열·연기 또는 먼지 등으로 인하여 화재신호를 발신할우려가 있는 장소(2.2.2 본문에 따른 수신기를 설치한 장소를 제외한다)에는 다음의 기준에서 정한 감지기 중적응성이 있는 감지기를 설치해야 한다.
- (1) 불꽃감지기
- (2) 정온식감지선형감지기
- (3) 분포형감지기
- (4) 복합형감지기
- (5) 광전식분리형감지기
- (6) 아날로그방식의 감지기
- (7) 다신호방식의 감지기
- (8) 축적방식의 감지기

법제처 5 국가법령정보센터

표 2.4.1 부착 높이에 따른 감지기의 종류

부착 높이	감지기의 종류
	차동식(스포트형, 분포형)
	보상식 스포트형
	정은식(스포트형, 감지선형)
4 DI DI	이온화식 또는 광전식(스포트형, 분리형, 공기흡입형)
4 m 미만	열복합형
	연기복합형
	열연기복합형
	불꽃감지기
	차동식(스포트형, 분포형)
	보상식 스포트형
	정은식(스포트형, 감지선형) 특종 또는 1종
	이온화식 1종 또는 2종
4 m 이상 8 m 미만	광전식(스포트형, 분리형, 공기흡입형) 1종 또는 2종
	열복합형
	연기복합형
	열연기복합형
	불꽃감지기
	차동식 분포형
	이온화식 1종 또는 2종
8 m 이상 15 m 미만	광전식(스포트형, 분리형, 공기흡입형) 1종 또는 2종
	연기복합형
	불꽃감지기
	이은화식 1종
15 m 이상 20 m 미만	광전식(스포트형, 분리형, 공기흡입형) 1종
10 111 018 20 111 012	연기복합형
	불꽃감지기
20 m 이상	불꽃감지기
20 111 018	광전식(분리형, 공기흡입형)중 아날로그방식
[비교] 1 간지기병 부찬	노이 동에 대하여 별도로 형식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비고] 1. 감지기별 부착 높이 등에 대하여 별도로 형식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 그 성능인정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다.
- 2. 부착 높이 20 m 이상에 설치되는 광전식 중 아날로그방식의 감지기는 공 칭 감지농도 하한값이 감광율 5 %/m 미만인 것으로 한다.
- 2.4.2 다음의 장소에는 연기감지기를 설치해야 한다. 다만, 교차회로방식에 따른 감지기가 설치된 장소 또는 2.4.1 단서에 따른 감지기가 설치된 장소에는 그렇지 않다.
- 2.4.2.1 계단・경사로 및 에스컬레이터 경사로
- 2.4.2.2 복도(30 m 미만의 것을 제외한다)
- 2.4.2.3 엘리베이터 승강로(권상기실이 있는 경우에는 권상기실)·린넨슈트·파이프 피트 및 덕트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
- 2.4.2.4 천장 또는 반자의 높이가 15 m 이상 20 m 미만의 장소
- 2.4.2.5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취침・숙박・입원 등 이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되는 거실
- (1) 공동주택・오피스텔・숙박시설・노유자시설・수련시설
- (2) 교육연구시설 중 합숙소
- (3) 의료시설, 근린생활시설 중 입원실이 있는 의원 조산원
- (4) 교정 및 군사시설

(5) 근린생활시설 중 고시원

- 2.4.3 감지기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다만, 교차회로방식에 사용되는 감지기, 급속한 연소 확대가 우려되는 장소에 사용되는 감지기 및 축적기능이 있는 수신기에 연결하여 사용하는 감지기는 축적기능이 없는 것으로 설치해야 한다.
- 2.4.3.1 감지기(차동식분포형의 것을 제외한다)는 실내로의 공기유입구로부터 1.5 m 이상 떨어진 위치에 설치할 것
- 2.4.3.2 감지기는 천장 또는 반자의 옥내에 면하는 부분에 설치할 것
- 2.4.3.3 보상식스포트형감지기는 정온점이 감지기 주위의 평상시 최고온도보다 20 ℃ 이상 높은 것으로 설치할 것
- 2.4.3.4 정온식감지기는 주방·보일러실 등으로서 다량의 화기를 취급하는 장소에 설치하되, 공칭작동온도가 최고주위온도보다 20 °C 이상 높은 것으로 설치할 것
- 2.4.3.5 차동식스포트형·보상식스포트형 및 정온식스포트형 감지기는 그 부착 높이 및 특정소방대상물에 따라 다음 표 2.4.3.5에 따른 바닥면적마다 1개 이상을 설치할 것

표 2.4.3.5 부착 높이 및 특정소방대상물의 구분에 따른 차동식·보상식·정온식스포트형감지기의 종류

			-	감지기의	종류(명	관위: m⁺)	
	부착 높이 및		스포트	보상식		정은	트형	
특정:	소방대상물의 구분	ş	Š	ş	Š			
		1종	2종	1종	2종	뽁종	1종	2종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로							
	된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그	90	70	90	70	70	60	20
4m 0 21	부분							
4111 012	기타 구조의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그	50	40	50	40	40	30	15
	부분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로							
	된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그	45	35	45	35	35	30	-
4m 이상 8m	부분							
이만	기타 구조의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그	30	25	30	25	25	15	-
	부분							

- 2.4.3.6 스포트형감지기는 45° 이상 경사되지 않도록 부착할 것
- 2.4.3.7 공기관식 차동식분포형감지기는 다음의 기준에 따를 것
- 2.4.3.7.1 공기관의 노출 부분은 감지구역마다 20 m 이상이 되도록 할 것
- 2.4.3.7.2 공기관과 감지구역의 각 변과의 수평거리는 1.5 m 이하가 되도록 하고, 공기관 상호 간의 거리는 6 m(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로 된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9 m) 이하가 되도록 할 것
- 2.4.3.7.3 공기관은 도중에서 분기하지 않도록 할 것
- 2.4.3.7.4 하나의 검출 부분에 접속하는 공기관의 길이는 100 m 이하로 할 것
- 2.4.3.7.5 검출부는 5° 이상 경사되지 않도록 부착할 것
- 2.4.3.7.6 검출부는 바닥으로부터 0.8 m 이상 1.5 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 2.4.3.8 열전대식 차동식분포형감지기는 다음의 기준에 따를 것

법제처 7 국가법령정보센터

- 2.4.3.8.1 열전대부는 감지구역의 바닥면적 18 m²(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로 된 특정소방대상물에 있어서는 22 m²)마다 1개 이상으로 할 것. 다만, 바닥면적이 72 m²(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로 된 특정소방대상물에 있어서는 88 m²) 이하인 특정소방대상물에 있어서는 4개 이상으로 해야 한다.
- 2.4.3.8.2 하나의 검출부에 접속하는 열전대부는 20개 이하로 할 것. 다만, 각각의 열전대부에 대한 작동여부를 검출부에서 표시할 수 있는 것(주소형)은 형식승인 받은 성능인정 범위 내의 수량으로 설치할 수 있다.
- 2.4.3.9 열반도체식 차동식분포형감지기는 다음의 기준에 따를 것
- 2.4.3.9.1 감지부는 그 부착 높이 및 특정소방대상물에 따라 다음 표 2.4.3.9.1에 따른 바닥면적마다 1개 이상으로 할 것. 다만, 바닥면적이 다음 표 2.4.3.9.1에 따른 면적의 2배 이하인 경우에는 2개(부착높이가 8 m 미만이고, 바닥면적이 다음 표 2.4.3.9.1에 따른 면적 이하인 경우에는 1개) 이상으로 해야 한다.

11	2.4.3.9.1	부참	≥ 01 ¹	및 통정	<u> </u>	구분0	[] 	열반도체실	차동식분포형감지기의 종류	4

보차 누이 미	==================================== 특정소방대상물의 구분	감지기의 종	류(단위: m²)
구의 표이 옷	JOTOMOPH TT	1종	2종
	주요구조부를 내화구조로 한	65	36
8 m 01만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	05	30
om uter	기타 구조의 소방대상물 또	40	23
	는 그 부분	40	23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로 된	50	36
8 m 이상 15 m 미만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	50	30
0 111 019 13 111 015	기타 구조의 소방대상물 또	20	23
	는 그 부분	30	23

- 2.4.3.9.2 하나의 검출부에 접속하는 감지부는 2개 이상 15개 이하가 되도록 할 것. 다만, 각각의 감지부에 대한 작동 여부를 검출기에서 표시할 수 있는 것(주소형)은 형식승인 받은 성능인정 범위 내의 수량으로 설치할 수 있다.
- 2.4.3.10 연기감지기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 2.4.3.10.1 연감지기의 부착 높이에 따라 다음 표 2.4.3.10.1에 따른 바닥면적마다 1개 이상으로 할 것

표 2.4.3.10.1 부착 높이에 따른 연기감지기의 종류

부착 높이	감지기의 종	류(단위: m²)
구역 표이	1종 및 2종	3종
4 m 이만	150	50
4 m 이상 20 m 미만	75	-

- 2.4.3.10.2 감지기는 복도 및 통로에 있어서는 보행거리 30 m(3종에 있어서는 20 m)마다, 계단 및 경사로에 있어 서는 수직거리 15 m(3종에 있어서는 10 m)마다 1개 이상으로 할 것
- 2.4.3.10.3 천장 또는 반자가 낮은 실내 또는 좁은 실내에 있어서는 출입구의 가까운 부분에 설치할 것
- 2.4.3.10.4 천장 또는 반자 부근에 배기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 부근에 설치할 것
- 2.4.3.10.5 감지기는 벽 또는 보로부터 0.6 m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할 것
- 2.4.3.11 열복합형감지기의 설치에 관하여는 2.4.3.3 및 2.4.3.9를, 연기복합형감지기의 설치에 관하여는 2.4.3.10을 , 열연기복합형감지기의 설치에 관하여는 2.4.3.5 및 2.4.3.10.2 또는 2.4.3.10.5를 준용하여 설치할 것
- 2.4.3.12 정온식감지선형감지기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 2.4.3.12.1 보조선이나 고정금구를 사용하여 감지선이 늘어지지 않도록 설치할 것
- 2.4.3.12.2 단자부와 마감 고정금구와의 설치간격은 10 ㎝ 이내로 설치할 것

법제처 8 국가법령정보센터

- 2.4.3.12.3 감지선형 감지기의 굴곡반경은 5 ㎝ 이상으로 할 것
- 2.4.3.12.4 감지기와 감지구역의 각 부분과의 수평거리가 내화구조의 경우 1종 4.5 m 이하, 2종 3 m 이하로 할 것 . 기타 구조의 경우 1종 3 m 이하, 2종 1 m 이하로 할 것
- 2.4.3.12.5 케이블트레이에 감지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케이블트레이 받침대에 마감금구를 사용하여 설치할 것
- 2.4.3.12.6 창고의 천장 등에 지지물이 적당하지 않은 장소에서는 보조선을 설치하고 그 보조선에 설치할 것
- 2.4.3.12.7 분전반 내부에 설치하는 경우 접착제를 이용하여 돌기를 바닥에 고정시키고 그곳에 감지기를 설치할 것
- 2.4.3.12.8 그 밖의 설치방법은 형식승인 내용에 따르며 형식승인 사항이 아닌 것은 제조사의 시방서에 따라 설치할 것
- 2.4.3.13 불꽃감지기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 2.4.3.13.1 공칭감시거리 및 공칭시야각은 형식승인 내용에 따를 것
- 2.4.3.13.2 감지기는 공칭감시거리와 공칭시야각을 기준으로 감시구역이 모두 포용될 수 있도록 설치할 것
- 2.4.3.13.3 감지기는 화재감지를 유효하게 감지할 수 있는 모서리 또는 벽 등에 설치할 것
- 2.4.3.13.4 감지기를 천장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감지기는 바닥을 향하여 설치할 것
- 2.4.3.13.5 수분이 많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방수형으로 설치할 것
- 2.4.3.13.6 그 밖의 설치기준은 형식승인 내용에 따르며 형식승인 사항이 아닌 것은 제조사의 시방서에 따라 설치할 것
- 2.4.3.14 아날로그방식의 감지기는 공칭감지온도범위 및 공칭감지농도범위에 적합한 장소에, 다신호방식의 감지 기는 화재신호를 발신하는 감도에 적합한 장소에 설치할 것. 다만,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않는 설치방법에 대하여는 형식승인 사항이나 제조사의 시방서에 따라 설치할 수 있다.
- 2.4.3.15 광전식분리형감지기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 2.4.3.15.1 감지기의 수광면은 햇빛을 직접 받지 않도록 설치할 것
- 2.4.3.15.2 광축(송광면과 수광면의 중심을 연결한 선)은 나란한 벽으로부터 0.6 m 이상 이격하여 설치할 것
- 2.4.3.15.3 감지기의 송광부와 수광부는 설치된 뒷벽으로부터 1 m 이내의 위치에 설치할 것
- 2.4.3.15.4 광축의 높이는 천장 등(천장의 실내에 면한 부분 또는 상층의 바닥하부면을 말한다) 높이의 80 % 이상 일 것
- 2.4.3.15.5 감지기의 광축의 길이는 공칭감시거리 범위 이내일 것
- 2.4.3.15.6 그 밖의 설치기준은 형식승인 내용에 따르며 형식승인 사항이 아닌 것은 제조사의 시방서에 따라 설치할 것
- 2.4.4 2.4.3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장소에는 각각 광전식분리형감지기 또는 불꽂감지기를 설치하거나 광전식공기 흡입형감지기를 설치할 수 있다.
- 2.4.4.1 화학공장・격납고・제련소 등: 광전식분리형감지기 또는 불꽃감지기. 이 경우 각 감지기의 공칭감시거리 및 공칭시야각 등 감지기의 성능을 고려해야 한다.
- 2.4.4.2 전산실 또는 반도체 공장 등: 광전식공기흡입형감지기. 이 경우 설치장소·감지면적 및 공기흡입관의 이격거리 등은 형식승인 내용에 따르며 형식승인 사항이 아닌 것은 제조사의 시방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 2.4.5 다음의 장소에는 감지기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법제처 9 국가법령정보센터

- 2.4.5.1 천장 또는 반자의 높이가 20 m 이상인 장소. 다만, 2.4.1 단서의 감지기로서 부착 높이에 따라 적응성이 있는 장소는 제외한다.
- 2.4.5.2 헛간 등 외부와 기류가 통하는 장소로서 감지기에 따라 화재 발생을 유효하게 감지할 수 없는 장소
- 2.4.5.3 부식성가스가 체류하고 있는 장소
- 2.4.5.4 고온도 및 저온도로서 감지기의 기능이 정지되기 쉽거나 감지기의 유지관리가 어려운 장소
- 2.4.5.5 목욕실・욕조나 샤워시설이 있는 화장실・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
- 2.4.5.6 파이프덕트 등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2개 층마다 방화구획된 것이나 수평단면적이 5 m² 이하인 것
- 2.4.5.7 먼지·가루 또는 수증기가 다량으로 체류하는 장소 또는 주방 등 평상시 연기가 발생하는 장소(연기감지 기에 한한다)
- 2.4.5.8 프레스공장・주조공장 등 화재 발생의 위험이 적은 장소로서 감지기의 유지관리가 어려운 장소
- 2.4.6 2.4.1 단서에도 불구하고 일시적으로 발생한 열·연기 또는 먼지 등으로 인하여 화재신호를 발신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표 2.4.6(1) 및 표 2.4.6(2) 에 따라 해당 장소에 적응성 있는 감지기를 설치할 수 있으며, 연기감 지기를 설치할 수 없는 장소에는 표 2.4.6(1)을 적용하여 설치할 수 있다.

법제처 10 국가법령정보센터

표 2.4.6(1) 설치장소별 감지기의 적응성(연기감지기를 설치할 수 없는 경우 적용)

환경 상태 전용 포함 포함 포함 시스 실실 보고 기고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설	치장소			적	용	열	감지	기				
환경			차	동	차	동	보	상	3	ğ	열	뿚	
상태 장소 형 등 등 교 로 지 기 기 경 등 중 중 중 중 중 중 중 중 중 중 중 중 중 중 중 중 중 중			식	스	식	분	식	스	٤	2	Oł	꽃	
1 2 1 2 1 2	환경	적용	포	Ε	포	형	포	E	۵	4	냘	감	비고
1. 번 전	상태	장소	ģ				400	ğ			로	지	
1. 먼 스 레 기 장. 다 생생장. 도 등 장실. 성유 등 이 다 당 장실. 성유, 목재・석 제 등 장상. 등 가공 공 등 하 하 역정. 도 등 가공 공 등 하 가 의 등 는 점을 하 가 의 공 등 하 가 의 공 등 하 가 의 공 등 하 가 의 공 등 하 가 의 공 등 하 가 의 공 등 하 가 의 공 등 하 가 의 공 등 하 가 의 공 등 하 가 의 공 등 하 가 의 공 등 하 가 의 공 등 하 가 의 의 가 의 의 가 의 의 가 의 의 가 의 의 의 의 의 의			1	2	1	2	1	2	=	1	ב	기	
1. 먼 지 또 쓰레기장. 하역장, 도등장실, 섭유. 이 ○ ○ ○ ○ ○ ○ ○ ○ ○ ○ ○ ○ ○ ○ ○ ○ ○ ○			종	중	종	종	종	종	종	종	식		
1. 먼													1. 불꽃감지기에 따라 감시가 곤란한 장소는 적응성이 있
지 또 는 미 대													는 열감지기를 설치할 것
는 미 쓰레기 경 , 하역장, 도 정실, 설유, 영요, 설유, 영요, 도 목재・석 제 등 가공 공 등 가공 공 등 화재학대가 급속하게 진행될 우리가 있는 장소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목종으로 설치할 것 공항작동 운도 75 °C 이하가 되도록 할 것 5. 섭유, 목재가공 공장 등 화재학대가 급속하게 진행될 우려가 있는 장소에 설치하는 경우 정은식감지기는 목종으로 설치할 것 공항작동 운도 75 °C 이하가 되도록 할 것 5. 섭유, 목재가공 공장 등 화재학대가 급속하게 진행될 우려가 있는 장소에 설치하는 경우 정은식감지기는 목종으로 설치할 것 공항작동 운도 75 °C 이하가 되도록 할 것 1. 차동식분포형감지기 또는 보상식스포트형감지기는 급격한 운도변화가 없는 장소에 환하여 사용할 것 2. 차동식분포형감지기 또는 보상식스포트형감지기는 급격한 운도변화가 없는 장소에 환하여 사용할 것 2. 차동식분포형감지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검출부에 수 등기가 침입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 3. 보상식스포트형감지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함수형으로 할 것 3. 보상식스포트형감지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함수형으로 할 것 1. 차동식분포형감지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감지부가 피식성가 가 무료 공장 중 현지 일 수 차리장 등 전기 실명하고 않도록 조치할 것 4. 불꽃감지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부식성가스에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함께 보고 수 보상식스포트형감지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부식성가스의 성상에 있는 등 경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부식성가스의 성상에 반응하지 않는 내산형 또는 내알칼리형으로 설치할 것 3. 정은식감지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부식성가스의 성상에 반응하지 않는 내산형 또는 내알칼리형으로 설치할 것 3. 정은식감지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투종으로 설치할 것 3. 정은식감지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등종으로 설치할 것 3. 정은식감지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등종으로 설치할 것 3. 정은식감지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등종으로 설치할 것 2. 불꽃감지기는 UV/IR형을 설치할 것 2. 불꽃감지기는 UV/IR형을 설치할 것 2. 불꽃감지기는 UV/IR형을 설치할 것 3. 청사에 실요 용접작 보고 보고 함께	1. 먼												2. 차동식분포형감지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검출부에 먼
는 비 하여장, 도 장실, 설유· 이 다 경으로 등 자공 공장 등 가공 공장 등 가공 공장 등 함께 확대가 급속하게 진행될 우려가 있는 장소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목종으로 설치할 것 4. 정은식감지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목종으로 설치할 것 5. 섬유, 목재가공 공장 등 화재확대가 급속하게 진행될 우려가 있는 장소에 설치하는 경우 정은식감지기는 목종으로 설치할 것 5. 섬유, 목재가공 공장 등 화재확대가 급속하게 진행될 우려가 있는 장소에 설치하는 경우 정은식감지기는 목종으로 설치할 것 8. 공칭작동 온도 75 °C 이하, 열아날로그식스포트형 감지기는 하재표시 설정은 80 °C 이하가 되도록 할 것 1. 차동식본포형감지기 또는 보상식스포트형감지기는 급격한 온도변화가 없는 장소에 환하여 사용할 것 2. 차동식본포형감지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검출부에 수 증기가 참입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 3. 보상식스포트형감지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검출부에 수 증기가 참입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 4. 불꽃감지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강지부가 피복되어 있고 검출부가 부식성가스에 영향을 받지 않는 것 오수처리장 등 전기 실, 오수처리장 등 경우에는 함시에는 감사는 경우에는 감지기 또는 열아날로그식스포트형감지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보시장이는 경우에는 강지부가 피복되어 있고 검출부가 부식성가스가 침입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 2. 보상식스포트형감지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부식성가스의 성상에 반응하지 않는 내산형 또는 내알칼리형으로 설치할 것 3. 정은식감지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목종으로 설치할 것 2. 불꽃감지기는 UV/IR형을 설치할 것	지 또	ᄊᆁ기자											지, 미분 등이 침입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
문 등 장실, 섬유, 다 생기가 하는 경우에는 검출부에 먼지, 미분 등이 침입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 4. 정은식감지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특종으로 설치할 것 5. 섬유, 목재가공 공장 등 화재확대가 급속하게 진행될 우려가 있는 장소에 설치하는 경우 정은식감지기는 목종으로 설치할 것 3.공창작동 온도 75 °C 이하. 얼아날로그식스포트형감지가는 함께 보시 설정은 80 °C 이하가 되도록 할 것 5. 섬유, 목재가공 공장 등 화재확대가 급속하게 진행될 우려가 있는 장소에 설치하는 경우 정은식감지기는 급격한 온도변화가 없는 장소에 함하여 사용할 것 2. 차동식분포형감지기 또는 보상식스포트형감지가는 급격한 온도변화가 없는 장소에 함하여 사용할 것 2. 차동식분포형감지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검출부에 수증기가 참입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 3. 보상식스포트형감지기, 정은식감지기 또는 얼아날로그식감지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방수형으로 설치할 것 4. 불꽃감지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방수형으로 설치할 것 4. 불꽃감지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함가 되었다지 않도록 조치할 것 2. 보상식스포트형감지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함나 경우에는 감지부가 피복되어 있고 검출부가 부식성가스에 영향을 받지 않는 것도 보상식스포트형감지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부식성가스의 성상에 반응하지 않는 내상칼리형으로 설치할 것 2. 보상식스포트형감지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투상이가스의 성상에 반응하지 않는 내산형 또는 내살칼리형으로 설치할 것 3. 정은식감지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특종으로 설치할 것 4. 주망, 기단 명 주방, 조리 상사에 실. 용접작 × × × × × × 0 0 0 0 0 0 0 0 0 0 0 0 0	= 01												3. 차동식스포트형감지기 또는 보상식스포트형감지기를 설
이 나 라스크로 제 + 석 제 등 가공 공 장	분 등												치하는 경우에는 검출부에 먼지, 미분 등이 침입하지 않도
생으로 등 가공 공	이 다		0	0	0	0	0	0	0	×	0	0	록 조치할 것
제류하는 장소	량으로												4. 정은식감지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목종으로 설치할
는 상	체류하	1											것
설치할 것.공청작동 온도 75 °C 이하. 열아날로그식스포트형 감지기는 화재표시 설정은 80 °C 이하가 되도록 할 것 2. 수 증기가 당으로 머무는 보상식스포트형감지기도는 급격한 온도변화가 없는 장소에 한하여 사용할 것 2. 차동식분포형감지기 또는 보상식스포트형감지기는 급격한 온도변화가 없는 장소에 한하여 사용할 것 2. 차동식분포형감지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검출부에 수 증기가 침입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 3. 보상식스포트형감지기. 정온식감지기 또는 열아날로그식감지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방수형으로 설치할 것 4. 불꽃감지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방수형으로 할 것 3. 부식성가 스 가 함께 함께 보신 등 전기 및 수 처리장 우 전기 실 등 전기 및 수 처리장 등 전기 본 등 전기 본 등 전기 본 등 전기 및 본 경찰부에 부식성가스가 침입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 2. 보상식스포트형감지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감지부가 피복되어 있고 검출부가 부식성가스에 영향을 받지 않는 것 또는 검출부에 부식성가스가 침입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 2. 보상식스포트형감지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부식성가스의 성상에 반응하지 않는 내산형 또는 내알칼리형으로 설치할 것 3. 정온식감지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목종으로 설치할 것 3. 정온식감지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목종으로 설치할 것 3. 정온식감지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목종으로 설치할 것 4. 주방, 기단 평 주방, 조리 실 등 습도가 많은 장소에는 방수형 감지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기가 입장 등 절차할 것 2. 불꽃감지기는 UV/IR형을 설치할 것 2. 불꽃감지기는 UV/IR형을 설치할 것	는 장	8											5. 섬유, 목재가공 공장 등 화재확대가 급속하게 진행될 우
영 감지기는 화재표시 설정은 80 °C 이하가 되도록 할 것 2. 수 증기가 다양으로 마이 무 는 등에실, 소 × × × × × ○ ○ ○ ○ ○ ○ ○ ○ ○ ○ ○ ○ ○ ○	소												려가 있는 장소에 설치하는 경우 정은식감지기는 특종으로
2. 수 증기가 다양으로 마이 등 하나 보고													설치할 것.공칭작동 온도 75 ℃ 이하, 열아날로그식스포트
2. 수 증기가 다양으로 대해 무 는 등 지기 세정실, 소 보고													형 감지기는 화재표시 설정은 80 ℃ 이하가 되도록 할 것
증기가 다양으로 머무는 장소 의 등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2 ^												1. 차동식분포형감지기 또는 보상식스포트형감지기는 급격
다양으로 머무는 장소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한 온도변화가 없는 장소에 한하여 사용할 것
로 머무는 등 등 보고		중기세정실,											2. 차동식분포형감지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검출부에 수
무 는 장소 3. 보장식스포트형감지기, 정본식감지기 또는 얼마달로그식 감지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방수형으로 설치할 것 4. 불꽃감지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방수형으로 할 것 4. 불꽃감지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감지부가 피복되어 있고 검출부가 부식성가스에 영향을 받지 않는 것 또는 검출부에 부식성가스가 침입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 으수처리장등		탕비실, 소	×	x	×	0	×	0	0	0	0	0	증기가 침입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
장소 3. 부 식성가 C 금 공 장 . 축전 지 실 . 오수처리장등 등 전 가 있 는 중 전 지 실 . 오수처리장등 등 전 가 있 는 중 전 지 실 . 오수처리장등 등 전 가 있 는 중 전 지 실 . 오수처리장등 등 전 가 있 는 중 전 지 실 . 오수처리장등 등 전 주 방 . 기 타 평 주 방 . 조리 상 시 에 실 . 용접작		독실 등											3. 보상식스포트형감지기, 정온식감지기 또는 열아날로그식
3. 부 식성가 스 가 발생할 우려지요. × × 이 이 이 ○ ○ ○ ○ ○ ○ ○ ○ ○ ○ ○ ○ ○ ○ ○													감지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방수형으로 설치할 것
식성가 스 가 발생할 우려가 있 는 장소 *** ** ** ** ** ** ** ** **	87												4. 불꽃감지기를 설치할 경우 방수형으로 할 것
스 가 보생할 수 제 리 장 ·	3. 부												1. 차동식분포형감지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감지부가 피
	식성가	こ ユ ユ 											복되어 있고 검출부가 부식성가스에 영향을 받지 않는 것
말생할 우려가 있 는 장소	스 가												또는 검출부에 부식성가스가 침입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
무려가 등 스포트형감지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무식성가스의 성상에 반응하지 않는 내산형 또는 내알칼리형으로 설치할 것 3. 정은식감지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특종으로 설치할 것 4. 주 방, 기 타 평 주방, 조리 상시에 실, 용접작 × × × × × × ○ ○ ○ ○ ○ ○ ○ ○ ○ ○ ○ ○ ○	발생할		×	x	0	0	0	0	0	×	0	0	2. 보상식스포트형감지기, 정온식감지기 또는 열아날로그식
있 는 장소 1 한동하시 않는 내산형 또는 내일할리형으로 설치할 것 3. 정온식감지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목종으로 설치할 것 4. 주 방, 기 타 평 주방, 조리 상시에 실, 용접작 × × × × × 이 이 실치할 것 1. 주방, 조리실 등 습도가 많은 장소에는 방수형 감지기를 설치할 것 연기가 업장 등 설치할 것 1. 조망, 조리실 등 습도가 많은 장소에는 방수형 감지기를 설치할 것 2. 불꽃감지기는 UV/IR형을 설치할 것	우려가												스포트형감지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부식성가스의 성상에
4. 주 방, 기 타 평 주방, 조리 상시에 실, 용접작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있 는	0											반응하지 않는 내산형 또는 내알칼리형으로 설치할 것
방, 기 타 평 주방, 조리 상시에 실, 용접작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장소												3. 정온식감지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특종으로 설치할 것
타 평 주방, 조리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4. 주												
상시에 실, 용접작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방, 기												
연기가 업장 등 2. 불꽃감지기는 UV/IR형을 설치할 것 체류하	타 평	주방, 조리											1. 주방, 조리실 등 습도가 많은 장소에는 방수형 감지기를
체류하	상시에	실, 용접작	×	×	×	×	×	×	0	0	0	0	설치할 것
	연기가	업장 등											2. 불꽃감지기는 UV/IR형을 설치할 것
는 장	체류하												
	는 장												

법제처 11 국가법령정보센터

설	치장소			적	용	얼	감지	21				
		차	동	차		보		2	ğ	열	물	
		식	_		분	식			2	OF		
환경	적용	포 포		포 포		平			4		감	비고
상태	장소	8		_		800				로		0.2
041	0 -	1	_	1	2	1	-	=	1))	
		· 종		ı .				종		식	- 1	
<u>소</u>		0	0	-	-	0	-	-	0	-		
5. 저하게 고은의 로 한 보 장	건조실, 살 균실, 보일 러실, 주조 실, 영사실, 스튜디오	×	×	×	×	×	×	0	0	0	×	-
6. 배 기가스 가 다 량으로 체류하 는 장 소	주차장, 차고, 화물취 급소 차로, 자가발전실, 트럭터미널, 엔진시험실	0	0	0	0	0	0	×	×	0	0	1. 불꽃감지기에 따라 감시가 곤란한 장소는 적용성이 있는 열감지기를 설치할 것 2. 열아날로그식스포트형감지기는 화재표시 설정이 60 °C 이하가 바람직하다.
7. 연기 가 다량 으로 유 입할 우 려가 있 는 장소	품저장실, 음 식물 운반용 엘리베이터, 주방 주변의 복도 및 통 로, 식당 등	0	0	0	0	0	0	0	0	0	×	1. 고체연료 등 가연물이 수납되어 있는 음식물배급실, 주 방전실에 설치하는 정온식감지기는 목종으로 설치할 것 2. 주방 주변의 복도 및 통로, 식당 등에는 정온식감지기를 설치하지 않을 것 3. 제1호 및 제2호의 장소에 열아날로그식스포트형감지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화재표시 설정을 60 °C 이하로 할 것
8. 물방 울이 발 생하는 장소	스레트 또는 철판으로 설 치한 지붕 창고·공장, 패키지형냉 각기전용수 납실,밀폐된 지하창고,냉 동실 주변 등	×	×	0	0	0	0	0	0	0	0	1. 보상식스포트형감지기, 정온식감지기 또는 열아날로그식 스포트형감지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방수형으로 설치할 것 2. 보상식스포트형감지기는 급격한 온도변화가 없는 장소에 한하여 설치할 것 3. 불꽃감지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방수형으로 설치할 것
	유리공장, 용 선로가 있는	×	×	×	×	×	×	0	0	0	×	-

법제처 12 국가법령정보센터

설	치장소			적	용	열김	사	기				
		차	동	차	동	보	상	3	3	엹	붎	
		식	스	식	_	식	스	£	2	0ŀ	巬	
환경	적용	포	≡	포	형	포	E	2	4	날	감	비고
상태	장소	ş	Š			900	ğ			로	지	
		1	2	1	2	1	2	특	1	ュ	기	
		종	종	종	종	중	종	종	쫑	샥		
도서 물 꽃이 노 출 되 는	장소, 용접 실, 주방, 작 업장, 주조 실 등											

[비고] 1. "○"는 당해 설치장소에 적응하는 것을 표시, "×"는 당해 설치장소에 적응하지 않는 것을 표시

법제처 13 국가법령정보센터

^{2.} 차동식스포트형, 차동식분포형 및 보상식스포트형 1종은 감도가 예민하기 때문에 비화재보 발생은 2종에 비해 불리한 조건이라는 것을 유의할 것

^{3.} 차동식분포형 3종 및 정온식 2종은 소화설비와 연동하는 경우에 한해서 사용할 것

^{4.} 다신호식감지기는 그 감지기가 가지고 있는 종별, 공칭작동온도별로 따르지 말고 상기 표에 따른 적용성이 있는 감지기로 할 것

표 2.4.6(2) 설치장소별 감지기의 적응성

설	치장소		적 응	열강	지기			적	응 연.	기감지	기			
		차동	차동	보상	정	열아	이온	광전	이온	광전	광전	광전	뿚	
		식스	식분	식스	온	날로	화식	식스	아날	아날	식분	아날	妥	
환경	적용	포트	포형	포트	식	그식	스포	포트	로그	로그	리형	로그	감	비고
상태	장소	형		형			트형	형	식스	식스		식분	지	
									포트	포트		리형	기	
									형	형				
1. 8	회의실, 응													
연 에	접실, 휴게													
의 해	실, 노래연													
연기가	습실, 오락													
체류하	실, 다방,						_		_					
며 환	음식점, 대	0	0	0	_	_	_	0	_	0	0	0	_	
기 가	합실, 카바													
되 지	레 등의 객													
않 는	실, 집회장,													
장소	연회장 등													
2. 취														
침시설	호텔 객실,													
로 사	여관, 수면	_	_	-	_	_	0	0	0	0	0	0	_	
용하는														
장소														
3. 연														
21 01														
외 의														
미분이	복도, 통로	-	_	_	_	_	0	0	0	0	0	0	0	
떠다니	등													
는 장														
소														
4. H														
	로비, 교회,													
1	관람장, 옥													
1	탑에 있는	-	0	-	-	-	-	0	-	0	0	0	0	
	기계실													
장소	-1-11 @													
5. 연														광전식스포트형감지기
기가														또는 광전아날로그식
	계단, 경사													스포트형감지기를 설
이동해		-	_	-	-	-	-	0	-	0	0	0	-	치하는 경우에는 당해
서 감	-													감지기회로에 축적기
지기에														
시기에														능을 갖지 않는 것으

법제처 14 국가법령정보센터

설	치장소		적용	열감	지기			적	응 연:	기감지	기			
		차동	차동	보상	정	열 아	이온	광전	이온	광전	광전	광전	불	
		식스	식분	식스	은	날로	화식	식스	아날	아날	식분	아날	妥	
환경	적용	포트	포형	포트	식	그식	스포	포트	로그	로그	리형	로그	감	비고
상태	장소	형		å			트형	췅	식스	식스		식분	지	
									포트	포트		리형	기	
									췅	형				
도달하														
는 장														로 할 것
소														
6. 훈														
소화재	전화기기실,													
의 우	통신기기실.									_				
려 가	전산실, 기	-	-	-	_	-	-	0	-	0	0	0	-	
있 는	계제어실													
장소														
7. 넓	-1107L #L													
은 공	체육관, 항													
간으로	공기 격납													
천장이	고, 높은 천													
높 아	장의 창고													
열 및	공장, 관람	-	0	-	_	-	-	_	-	_	0	0	0	
연기가	석 상부 등													
확산하	감지기 부착													
는 장	높이가 8 m													
소	이상의 장소													
				L							L	L		

[비고] 1. "○"는 당해 설치장소에 적응하는 것을 표시

- 2. "◎" 당해 설치장소에 연기감지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당해 감지회로에 축적기능을 갖는 것을 표시
- 차동식스포트형, 차동식분포형, 보상식스포트형 및 연기식(당해 감지기회로에 축적기능을 갖지 않는 것) 1종은 감도가 예민하기 때문에 비화재보 발생은 2종에 비해 불리한 조건이라는 것을 유의할 것
- 4. 차동식분포형 3종 및 정은식 2종은 소화설비와 연동하는 경우에 한해서 사용할 것
- 5. 광전식분리형감지기는 평상시 연기가 발생하는 장소 또는 공간이 협소한 경우에는 적용성이 없음
- 6. 넓은 공간으로 천장이 높아 열 및 연기가 확산하는 장소로서 차동식분포형 또는 광전식분리형 2종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조사의 사양에 따를 것
- 7. 다신호식감지기는 그 감지기가 가지고 있는 종별, 공칭작동은도별로 따르고 표에 따른 적응성이 있는 감지기로 할 것
- 8. 축적형감지기 또는 축적형중계기 혹은 축적형수신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2.4에 따를 것
- 2.5 음향장치 및 시각경보장치
- 2.5.1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음향장치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 2.5.1.1 주음향장치는 수신기의 내부 또는 그 직근에 설치할 것
- 2.5.1.2 층수가 11층(공동주택의 경우에는 16층)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경보를 발할 수 있 도록 할 것
- 2.5.1.2.1 2층 이상의 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 및 그 직상 4개 층에 경보를 발할 것
- 2.5.1.2.2 1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ㆍ그 직상 4개 층 및 지하층에 경보를 발할 것
- 2.5.1.2.3 지하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ㆍ그 직상층 및 기타의 지하층에 경보를 발할 것
- 2.5.1.3 지구음향장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층마다 설치하되, 해당 층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음향장치까지의 수평거리가 25 m 이하가 되도록 하고, 해당 층의 각 부분에 유효하게 경보를 발할 수 있도록 설치할 것. 다만, 「비상방송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202)」에 적합한 방송설비를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와 연동하여 작동하도록 설치한 경우에는 지구음향장치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법제처 15 국가법령정보센터

- 2.5.1.4 음향장치는 다음의 기준에 따른 구조 및 성능의 것으로 할 것
- 2.5.1.4.1 정격전압의 80 % 전압에서 음향을 발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다만, 건전지를 주전원으로 사용하는 음향장치는 그렇지 않다.
- 2.5.1.4.2 음향의 크기는 부착된 음향장치의 중심으로부터 1 m 떨어진 위치에서 90 dB 이상이 되는 것으로 할 것 2.5.1.4.3 감지기 및 발신기의 작동과 연동하여 작동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 2.5.1.5 2.5.1.3에도 불구하고 2.5.1.3의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기둥 또는 벽이 설치되지 아니한 대형공간의 경우 지구음향장치는 설치대상 장소의 가장 가까운 장소의 벽 또는 기둥 등에 설치할 것
- 2.5.2 청각장애인용 시각경보장치는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시각경보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서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 2.5.2.1 복도·통로·청각장애인용 객실 및 공용으로 사용하는 거실(로비, 회의실, 강의실, 식당, 휴게실, 오락실, 대기실, 체력단련실, 접객실, 안내실, 전시실,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를 말한다)에 설치하며, 각 부분으로부터 유효하게 경보를 발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할 것
- 2.5.2.2 공연장·집회장·관람장 또는 이와 유사한 장소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시선이 집중되는 무대부 부분 등에 설치할 것
- 2.5.2.3 설치 높이는 바닥으로부터 2 m 이상 2.5 m 이하의 장소에 설치할 것. 다만, 천장의 높이가 2 m 이하인 경우에는 천장으로부터 0.15 m 이내의 장소에 설치해야 한다.
- 2.5.2.4 시각경보장치의 광원은 전용의 축전지설비 또는 전기저장장치(외부 전기에너지를 저장해 두었다가 필요한 때 전기를 공급하는 장치)에 의하여 점등되도록 할 것. 다만, 시각경보기에 작동전원을 공급할 수 있도록 형식승인을 얻은 수신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2.5.3 하나의 특정소방대상물에 2 이상의 수신기가 설치된 경우 어느 수신기에서도 지구음향장치 및 시각경보장치를 작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2.6 발신기
- 2.6.1 자동화재탐지설비의 발신기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 2.6.1.1 조작이 쉬운 장소에 설치하고, 스위치는 바닥으로부터 0.8 m 이상 1.5 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할 것
- 2.6.1.2 특정소방대상물의 층마다 설치하되, 해당 층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발신기까지의 수평거리가 25 m 이하가 되도록 할 것. 다만, 복도 또는 별도로 구획된 실로서 보행거리가 40 m 이상일 경우에는 추가로 설치해야 한다.
- 2.6.1.3 2.6.1.2에도 불구하고 2.6.1.2의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기둥 또는 벽이 설치되지 아니한 대형공간의 경우 발신기는 설치대상 장소의 가장 가까운 장소의 벽 또는 기둥 등에 설치할 것
- 2.6.2 발신기의 위치를 표시하는 표시등은 함의 상부에 설치하되, 그 불빛은 부착면으로부터 15° 이상의 범위 안에서 부착지점으로부터 10 m 이내의 어느 곳에서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적색등으로 해야 한다.
- 2.7 전원
- 2.7.1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상용전원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 2.7.1.1 상용전원은 전기가 정상적으로 공급되는 축전지설비, 전기저장장치(외부 전기에너지를 저장해 두었다가 필요한 때 전기를 공급하는 장치) 또는 교류전압의 옥내 간선으로 하고, 전원까지의 배선은 전용으로 할 것 2.7.1.2 개폐기에는 "자동화재탐지설비용"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법제처 16 국가법령정보센터

2.7.2 자동화재탐지설비에는 그 설비에 대한 감시상태를 60분간 지속한 후 유효하게 10분(감시상태 유지를 포함한다) 이상 경보할 수 있는 비상전원으로서 축전지설비(수신기에 내장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전기저장장치(외부 전기에너지를 저장해 두었다가 필요한 때 전기를 공급하는 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다만, 상용전원이축전지설비인 경우 또는 건전지를 주전원으로 사용하는 무선식 설비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2.8 배선

- 2.8.1 배선은「전기사업법」제67조에 따른「전기설비기술기준」에서 정한 것 외에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한다.
- 2.8.1.1 전원회로의 배선은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2)」2.7.2의 표 2.7.2(1)에 따른 내화배선에 따르고, 그 밖의 배선(감지기 상호간 또는 감지기로부터 수신기에 이르는 감지기회로의 배선을 제외한다)은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2)」2.7.2의 표 2.7.2(1) 또는 표 2.7.2(2)에 따른 내화배선 또는 내열배선에 따를 것
- 2.8.1.2 감지기 상호간 또는 감지기로부터 수신기에 이르는 감지기회로의 배선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 2.8.1.2.1 아날로그식, 다신호식 감지기나 R형수신기용으로 사용되는 것은 전자파 방해를 받지 않는 실드선 등을 사용해야 하며, 광케이블의 경우에는 전자파 방해를 받지 아니하고 내열성능이 있는 경우 사용할 것. 다만, 전자파 방해를 받지 않는 방식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2.8.1.2.2 2.8.1.2.1 외의 일반배선을 사용할 때는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2)」2.7.2의 표 2.7.2(1) 또는 표 2.7.2(2)에 따른 내화배선 또는 내열배선으로 사용할 것
- 2.8.1.3 감지기회로의 도통시험을 위한 종단저항은 다음의 기준에 따를 것
- 2.8.1.3.1 점검 및 관리가 쉬운 장소에 설치할 것
- 2.8.1.3.2 전용함을 설치하는 경우 그 설치 높이는 바닥으로부터 1.5 m 이내로 할 것
- 2.8.1.3.3 감지기 회로의 끝부분에 설치하며, 종단감지기에 설치할 경우에는 구별이 쉽도록 해당 감지기의 기판 및 감지기 외부 등에 별도의 표시를 할 것
- 2.8.1.4 감지기 사이의 회로의 배선은 송배선식으로 할 것
- 2.8.1.5 전원회로의 전로와 대지 사이 및 배선 상호간의 절연저항은 「전기사업법」제67조에 따른 「전기설비기술 기준」이 정하는 바에 의하고, 감지기회로 및 부속회로의 전로와 대지 사이 및 배선 상호간의 절연저항은 1경계 구역마다 직류 250 V의 절연저항측정기를 사용하여 측정한 절연저항이 0.1 MΩ 이상이 되도록 할 것
- 2.8.1.6 자동화재탐지설비의 배선은 다른 전선과 별도의 관·덕트(절연효력이 있는 것으로 구획한 때에는 그 구획된 부분은 별개의 덕트로 본다)·몰드 또는 풀박스 등에 설치할 것. 다만, 60 V 미만의 약 전류회로에 사용하는 전선으로서 각각의 전압이 같을 때에는 그렇지 않다.
- 2.8.1.7 P형 수신기 및 G.P형 수신기의 감지기 회로의 배선에 있어서 하나의 공통선에 접속할 수 있는 경계구역은 7개 이하로 할 것
- 2.8.1.8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회로의 전로저항은 50 Ω 이하가 되도록 해야 하며, 수신기의 각 회로별 종단에 설치되는 감지기에 접속되는 배선의 전압은 감지기 정격전압의 80 % 이상이어야 할 것

법제처 17 국가법령정보센터